

# 예 산 총 칙

2010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| 일시차입한도액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    | 242,142,590 | 7,264,278 |
| 일반회계           | 234,952,340 | 7,048,570 |
| 특별회계           | 7,190,250   | 215,708   |
| 기타특별회계         | 7,190,250   | 215,708   |
| 상수도특별회계        | 3,251,280   | 97,538    |
| 항공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 | 52,687      | 1,581     |
|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    | 875,403     | 26,262    |
|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  | 840,320     | 25,210    |
|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| 490,000     | 14,700    |
|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    | 108,829     | 3,265     |
| 경영(수익)사업특별회계   | 430,000     | 12,900    |
|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  | 248,909     | 7,467     |
| 농어촌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  | 889,938     | 26,698    |
| 기반시설특별회계       | 2,000       | 60        |
| 담수어양식사업특별회계    | 884         | 27    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 과 같다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437,198천원으로 한다

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 승인 얻은 것으로 본다.